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0. 11. 14.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7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 11.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신 귀 철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 상수동 청사는 토정길 확장공사(도시계획)구간에 포함되어 새롭게 건립할 청사확보가 필요 상수동 262-4 (329㎡), 상수동 262-11 (93㎡) 및 위 지상 건물 (193.65㎡)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과
- 상암동 택지개발 제3공구에 포함되어 현청사를 손실보상받고, 신청사부지로 상암동 7번지1호 일대를 청사부지로 매입하여 상암동 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결과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지역으로 대상지가 선정되고 구 공유재산심의결과 적정 통과되어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구 예산 반영 후 시비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1	대	상수동	422.00	985,000	2001년도 상반기	동 청 사 부지매입	최용현외1 상수동 262-4, 11	취득
	건물	262-4, 11	193.65					
2	대	상암동 7-1	836.00	1,500,000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3	대	용강동 117-2	840.70	1,700,000	2001년도 상반기	공 영 주차장 건 설	오계한 서교동 407-17	취득
	건물		349.29					
4	대	성산동 199-4	99.00	1,670,000			김석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연희한양(아) 2-705	
	전	성산동 199	912.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수동과 상암동의 신청사건립은 도로확장과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청사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동 청사부지매입의 건은 '99년도 제6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2000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매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이 취소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

○ 2001년도에 건립예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용강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의 입지여건은 강변북로, 마포로, 토정길, 강변진입로를 경계로 용강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12m, 동측으로 7 ~ 8m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대교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이 공존하는 주거밀집지역이며, 성산2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는 마포구청 앞 홍제천 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부지 앞 도로는 폭을 20m로 확장할 계획에 있으며 다세대 등 주택이 밀집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2000.11.

제 출 자: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 현 상수동 청사는 토정길 확장공사(도시계획)구간에 포함되어 새롭게 건립할 청사확보가 필요 상수동 262-4(329㎡), 상수동 262-11(93㎡) 및 위 지상 건물(193.65㎡)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과
- 상암동 택지개발 제3공구에 포함되어 현청사를 손실보상받고, 신청사부지로 상암동 7번지1호 일대를 청사부지로 매입하여 상암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결과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지역으로 대상지가 선정되고 구 공유재산심의결과 적정 통과되어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구 예산 반영후 시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

입력 번호	재 산 표 시			추경가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 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1	대	마포구 상수동 262-4, 11	422.00	985,000	2001년도 상반기	동 청 사 부지매입	○최용현외 1 마포구상수동 262-4, 11	취득
	건물	마포구 상수동 262-4, 11	193.65					
2	대	마포구 상암동 7-1호	836.00	1,500,000	2001년도 상반기	동 청 사 부지매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취득
3	대	마포구 용강동 117-2	840.70	1,700,000	2001년도 상반기	공 영 주차장 건	○오계한 마포구서교동 407-17	취득
	건물	마포구 용강동 117-2	349.29					
4	대	마포구 성산동 199-4	99.00	1,670,000	2001년도 상반기	공 영 주차장 건	○김석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연희한양(아) 2-705	취득
	전	마포구 성산동 199	912.00					

3. 근 거

-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 제77조
- 지방자치법(2000. 1. 12 법률 제6115호) 제35조제1항제6호
- 지방재정법시행령(2000. 10. 20 대통령령 제16983호) 제84조제2항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2000.1.13 조례 제450호) 제36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9.11.10 규칙 제314호) 제29조

(별지 제30호 서식)

구유재산관리계획

연도관리 계획 총괄표(6-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1,258.00	2,485,000			2	1,258.00	2,485,000	동청사지 취득
		건물	1	193.65	15,000			1	193.65	15,000	
		기타									
	1. 매입	토지	2	1,258.00	2,485,000			2	1,258.00	2,485,000	동청사지 취득
		건물	1	193.65	15,000			1	193.65	15,000	
		기타									
2. 교환	토지										
으로	건물										
취득	기타										
3. 기타	토지										
취득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으로	건물										
처분	기타										

연도관리 계획 총괄표(6-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 표시			추 정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지 건물	상수동262-4,11 상수동262-4,11	422.00 193.65	985,000 15,000	2001년 상반기	토정길확장공사로현청 사철거에 따른 신청사 부지 취득	마포구 상수동 264-4 최용현 외1	취득
2	대지	상암동7-1일원	836.00	1,500,000	2001년 상반기	상암택지개발사업 부지내 현청사 철거에 따른 신청사부지 취득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취득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6-4"를 참조

{별지 제30호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도관리 계획 총괄표(6-1)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계	2	1,851.70	3,370,000				2	1,851.70	3,370,000	공주부취 영장지득
	토지										
	건물 기타	1	349.29	264,000				1	349.29	264,000	
취	1. 매입	2	1,851.70	3,370,000				2	1,851.70	3,370,000	공주부취 영장지득
	토지										
	건물 기타	1	349.29	264,000				1	349.29	264,000	
취	2. 교환										
	으로										
	취득 기타										
취	3. 기타										
	토지										
	취득 건물 기타										
취	계										
	토지										
	건물										
	기타										
취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취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취	6. 교환										
	으로										
	취득 기타										

연도관리 계획 총괄표(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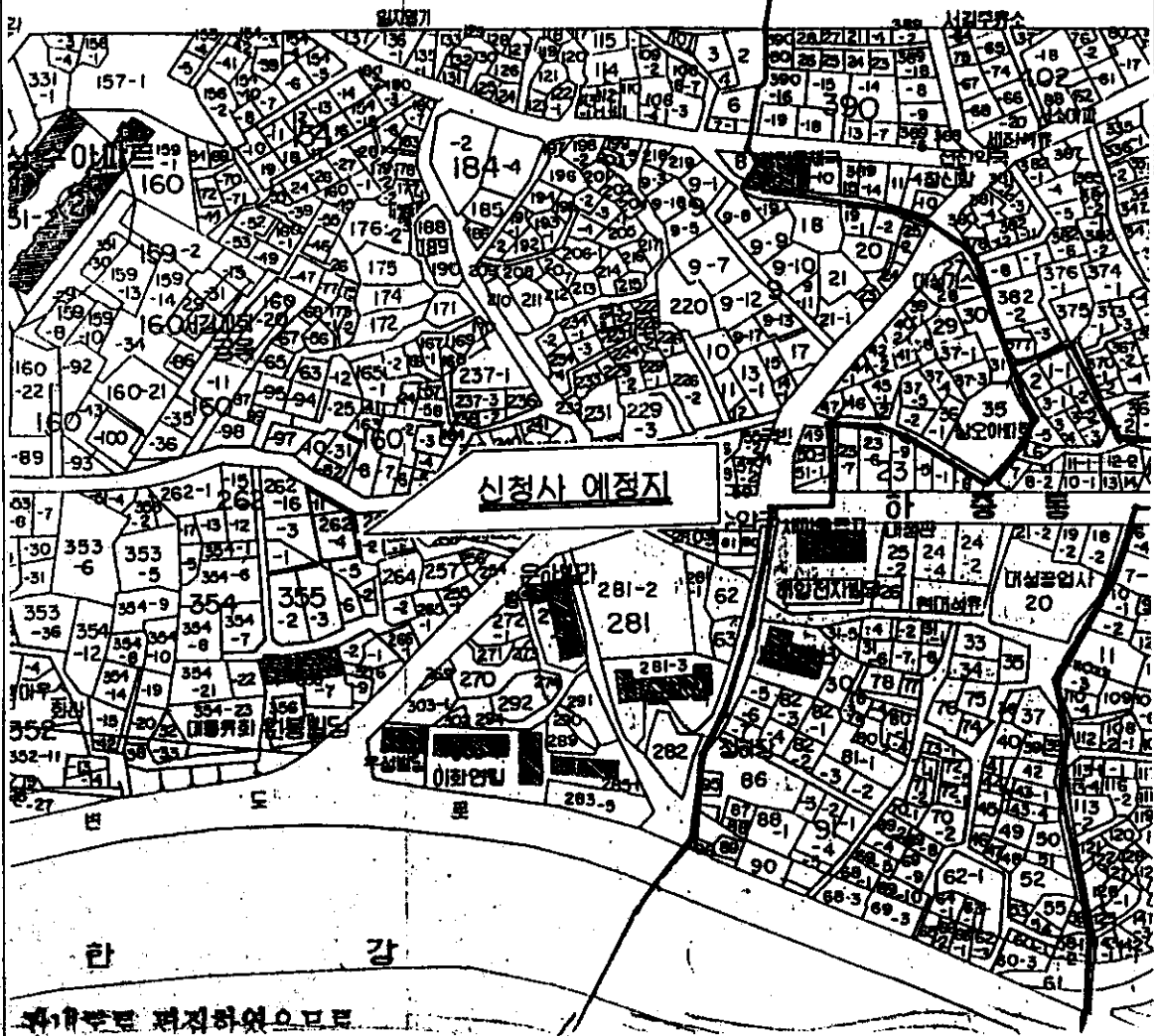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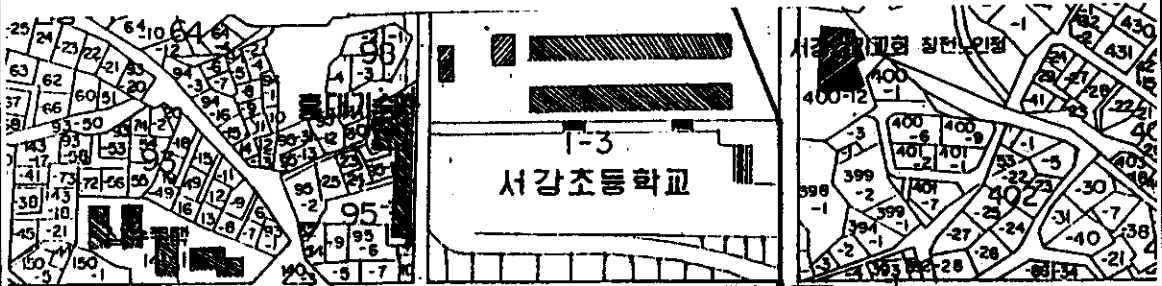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	용강동117-2	840.7	1,700,000	2001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건설	마포구 서교동 407-17 오계한	취득
	건물	용강동117-2	349.29	264,000				
2	대	성산동199-4	99.00	1,670,000	2001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건설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연희한양(아) 2-705 김석동	취득
	대	성산동199	9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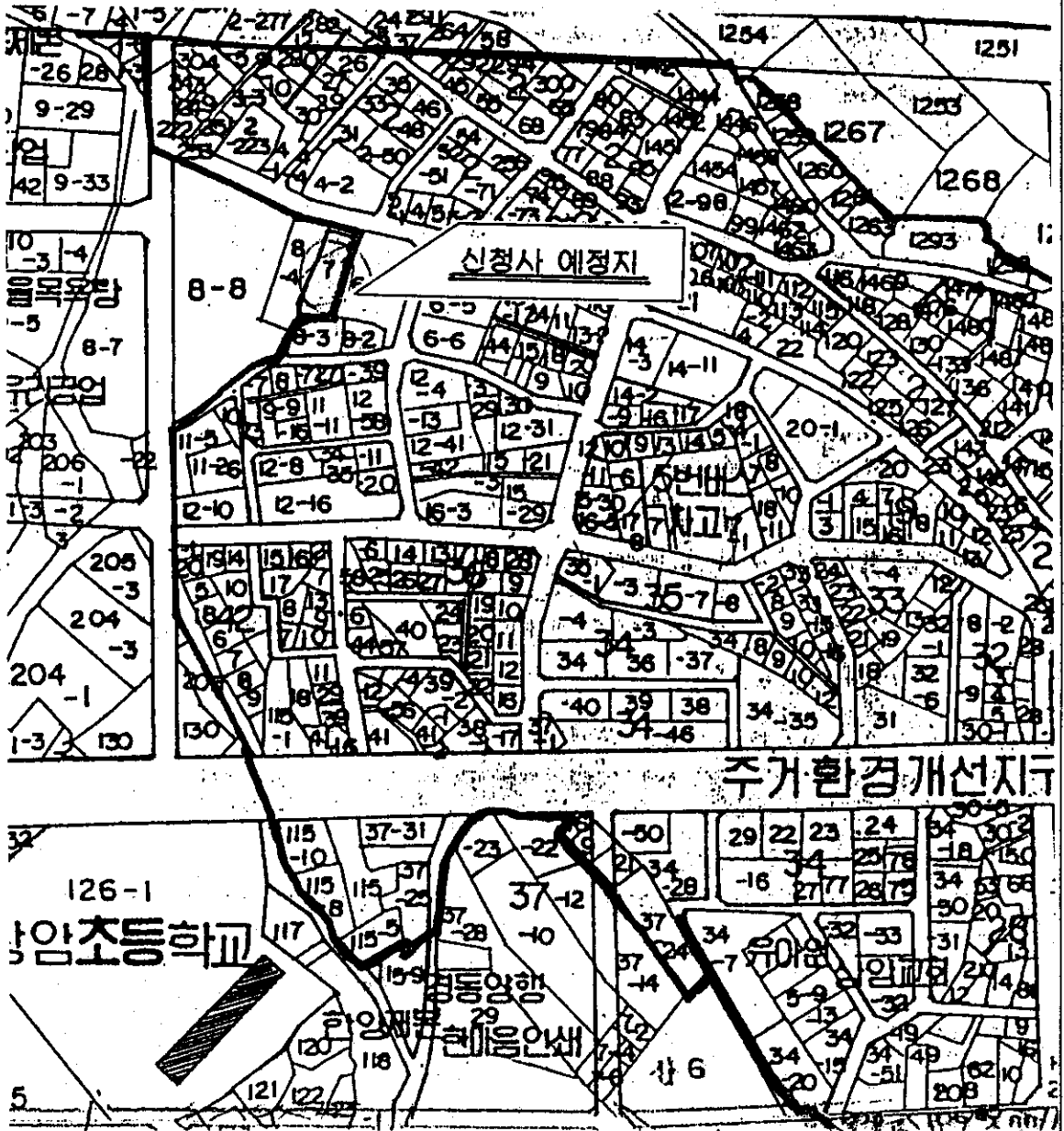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6-4"를 참조

상수동 신청사 예정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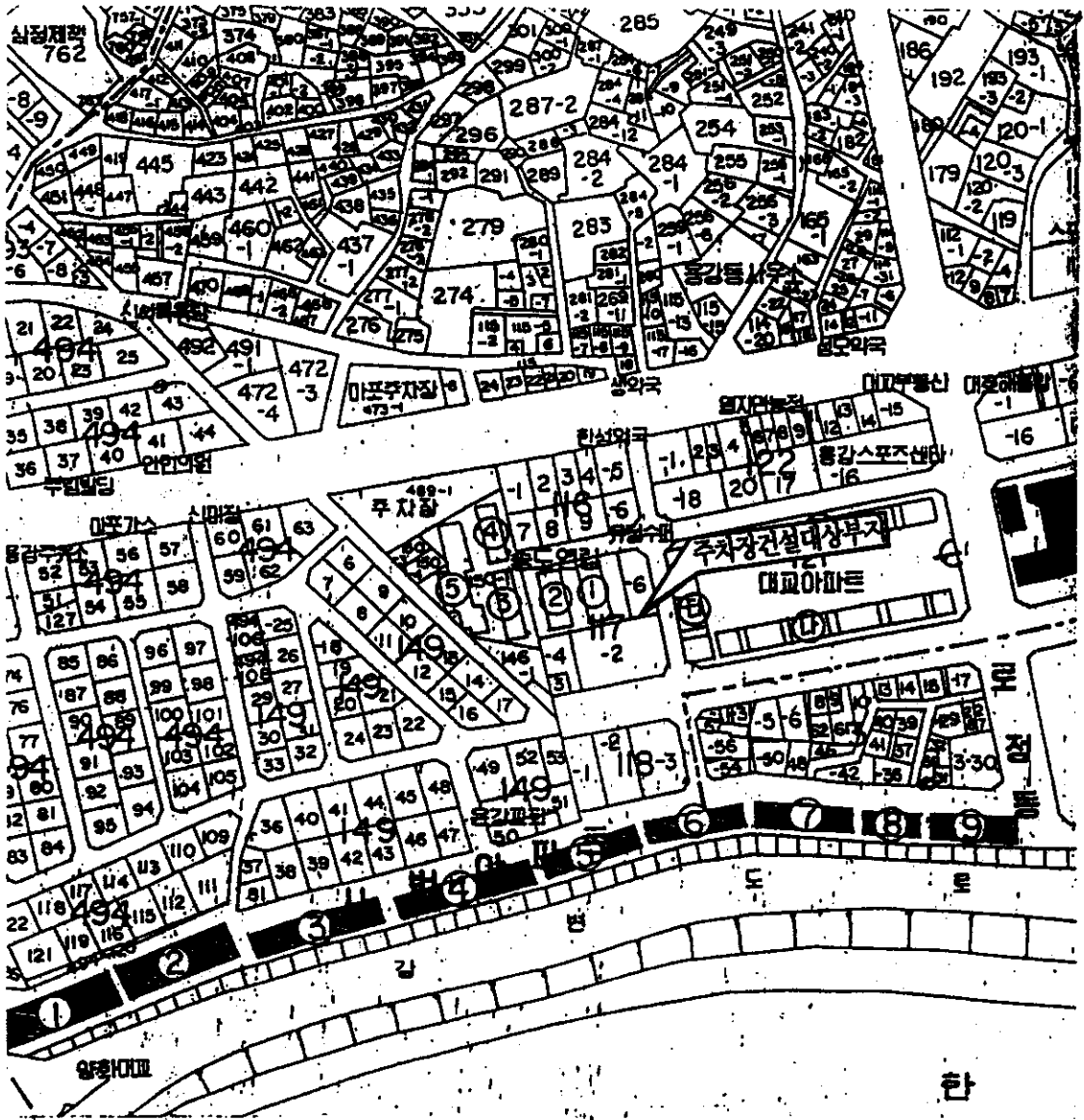


본도를 편입하여 편입하엿으므로

상암동청사 위치도



용강동공영주차장건설대상부지위치도



성산동공영주차장건설대상부지위치도

